

# 현장실습 운영규정

제 정 2016. 06.

개 정 2017. 05.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교육부 고시 제2017-115호 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」(2017.3.1.개정) 및 본교 학칙 제39조3항에 근거하여 수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2017.05.24.)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(개정2017.05.01.)

1. "현장실습수업"(이하 '현장실습'이라 한다)이란본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,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.(개정 2017.05.24.)
2. "실습학기제"란 학기 단위로 일정기간 연속하여 운영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.(신설2017.05.24.)
3. "현장실습기관"(이하 "실습기관"이라 한다)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연구기관,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.(개정2017.05.24.)
4. "현장실습지원비"는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현장 실습 장려 등을 위하여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할 교육지원비용을 말한다.(개정2017.05.24.)
5. "현장실습지원센터"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란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본교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조직을 말한다.(개정2017.05.24.)

**제3조(적용제외 및 우선적용)** ①이 규정은 학부과정 외 대학원(특수대학원 포함)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(개정2017.05.24.)

②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,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현장실습은 해당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(개정2017.05.24.)

③이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적용 제외대상 범위 외 본교 학부(과)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한 실습·실습·실기 과목(외부 실습 포함) 및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습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# 제2장 현장실습 운영(개정2017.05.24.)

**제4조(현장실습 구분)** ①현장실습은 학기 수업의 일부 또는 비연속적으로 운영하는 실습도 포함한다.(개정2017.05.24.)

②현장실습은 필요한 경우 학기단위(여름·겨울학기 포함)로 일정기간 연속 실시하는 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.(개정2017.05.24.)

**제5조(현장실습 운영 방법)** ①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·기술·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2017.05.24.)

②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한다.(개정2017.05.24.)

③실습생의 전공 분야,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,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전문성, 현장실습 시설·설

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.(신설2017.05.24.)

④현장실습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.(신설2017.05.24.)

- 가. 현장실습 수업계획
- 나. 수강신청 계획
- 다.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및 현장 지도 계획
- 라. 지도(담당)교수 현장 방문 지도 계획
- 마. 평가 방식, 학점 부여 근거 및 기준
- 바. 기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⑤실습기관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(이하 “현장실습생”이라 한다)에게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.(신설 2017.05.24.)

**제6조(현장실습 운영시간)** ①현장실습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(개정 2017.05.24.)

- 1.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,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. 다만,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.

②현장실습은 제1항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,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현장실습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(개정2017.05.24.)

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, 제4조2항에서 정한 실습학기제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 연속 4주이상 전일제(1일6시간이상)로 하여야 한다.(개정2017.05.24.)

**제7조(현장실습지원비)** ①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2017.05.24.)

②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(개정 2017.05.24.)

③제5조제4항에 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, 「최저임금법」 및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(개정2017.05.24.)

④(삭제2017.05.24.)

**제8조(현장실습생)** ①현장실습 대상은 2학년이상 재학생으로 한다(외국인유학생(복수학위과정생 및 교환학생 등)포함). 다만, 제2조2호에서 정한 ‘실습학기제’의 대상은 3학년이상 재학생으로 한다.(개정 2017.05.24.)

②현장실습 이수자는 제1항의 대상자 중 현장실습 신청 해당학기를 등록한 학생으로 한다.

③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(개정2017.05.24.)

- 1. 「교육부 고시 제2017-115호」 및 본교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 및 기준
- 2.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
- 3. 현장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

④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.(개정2017.05.24.)

- 1.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

2.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
3.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
4. 「교육부 고시 제2017-115호」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

**제9조(실습 내용 변경 등)** ①현장실습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 내용,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습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현장실습생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.(개정 2017.05.24.)

②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와의 협의 하에 현장실습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. 단,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 교육과정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(개정 2017.05.24.)

1. 무단결석 등 현장실습생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현장실습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
2. 제5조 제4항의 수업계획에 따른 실습지도에 불응하는 경우

**제10조(현장실습의 평가 등)** ①현장실습의 평가를 위해 학생의 현장실습 평가 기준을 실습기관에 안내하고,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제출 받아 학점에 반영한다.

②실습기관에서 자체 기준,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,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도록 요청 한다.

③기타 현장실습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1조(실습학기제의 대상 및 학점 등)**(신설2017.05.24.)실습학기제의 대상 및 학점 이수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제3장 실습학기제 운영(신설2017.05.24.)

**제12조(실습학기제 구분)**(신설2017.05.24.) ①실습학기제는 현장실습 중 학칙이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 운영하며, ‘현장실습’과목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.

②현장실습지원센터는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 제6조의 고등교육기관의 정보 공시 대상인 ‘전일제(1일 6시간 이상)로 4주 연속 운영하는 실습학기제’를 문제없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실습학기제 운영 방법)** ①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절차에 따라 운영 한다.(개정 2017.05.24.)

1. 학기별 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수립
2. 학기별 실습학기제 운영 산업체 수요 조사 및 접수
3. 실습학기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정보 공지
4.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 및 접수
5. 실습기관 및 학생 간 연계 및 선발
6.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대상 사전 교육
7. 실습학기제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
8. 실습기관별 실습학기제 계획에 따른 실습 수행
9. 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
10. 실습기관의 현장실습생 출석부, 평가표 등 제반 서류 제출

- 11. 참여 학생의 보고서 등 제반 서류 제출
- 12.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학점 인정 처리

②(삭제2017.05.24.)

③제1항에서 정한 운영절차 및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**제14조(실습학기제와 협약)**(신설2017.05.24.) ①제5조 제4항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, 이를 바탕으로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, 현장실습생,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. 다만, 협약 시행에 있어 본교 및 실습기관은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대신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협약에 근거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.

**제15조(실습기관 관리 및 점검)**(신설2017.05.24.) 본교는「교육부 고시 제2017-115호」 제15조에서 명시한 내용에 따라 실습기관 관리 및 점검을 진행한다.

**「교육부 고시 제2017-115호」**

제15조(실습기관 관리 및 점검) ① 실습기관은 실습학기제 운영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세부 운영 계획을 학교에 제출하고 이를 협의한다.

- 1. 실습기관 정보
- 2. 현장실습 시간 및 기간
- 3. 현장실습 대상 전공, 인원 및 학년
- 4.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내용
- 5. 현장실습지원비 및 현장실습생 지원 사항
- 6.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

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학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협의한 결과에 따라 운영한다.

- 1.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및 절차
- 2. 현장실습생 교육, 지도 및 관리를 위한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배치
- 3.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
- 4.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, 장비, 물품 등의 확보 및 제공
- 5. 현장실습생 지도, 출석 및 평가 관리

③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출결, 교육운영, 실습평가 및 현장실습생 보호를 담당하는 실습기관 교육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한다. 필요한 경우 학교 또는 실습기관은 교육담당자에게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학교의 장은 실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도(담당)교수 등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한다.

**제16조(학생 보호)** ①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,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현장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·신체 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 한다. 단, 실습기관이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학교의 보험 가입을 갈음할 수 있다.

③기타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에 대한 보건·안전·환경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시행 한다.

**제17조(국외 현장실습)** ①국외 현장실습 운영 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(개정 2017.05.24.)

1. 수행국가에서 정한 법령과 관련된 사항.
2. 대한민국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본교 학칙에서 정한 사항.

②국외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현장실습 종료 후 이수확인서 등의 보고와 함께 국가에서 발급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.(신설2017.05.24.)

**제18조(현장실습 증명 발급)** 현장실습 이수한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(개정2017.05.24.)

1. 현장실습 개설 년도, 학기 및 과정 정보
2. 실습기관명, 현장실습 기간, 내용 등
3. 학생 정보 및 이수 학점 수 등

## 제4장 현장실습 지원체계(신설 2017.05.24.)

**제19조(지원센터)**(개정2017.05.24.) ①체계적 현장실습 관리를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, 운영 한다.

②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, 관련 규정 제·개정 등 현장실습 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 하며,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
2. 실습기관의 수요조사,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
3. 학생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
4.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 사전 교육
5.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
6. 현장실습 운영 자료 관리
7.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
8. 그 밖의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

③지원센터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부 운영 계획서를 검토하고 실습기관과의 협의·조정을 통해 현장실습 운영 내용 및 계획을 확정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.

④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실시에 앞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기준 및 방법, 준수사항,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⑤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 실시 중 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한다. (개정 2017.05.24.)

⑥(삭제2017.05.24.)

⑦(삭제2017.05.24.)

⑧기타 지원센터 운영 및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20조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현장실습 세부 운영 사항 및 각 조문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실습지원비의 특례)**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수행 지원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실습지원비 외 별도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3조(학점 인정의 특례)** 제15조제2항에 따른 학점 인정 학기 적용 방식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적용의 특례)** 이 개정 규정은 2017학년도 1학기 개설과목부터 적용한다.

## 현장실습 운영규정 세부지침

제정: 2016. 06. 01

개정: 2017. 05. 00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「현장실습 운영규정」에서 정한 현장실습 운영 관련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현장실습 교육과정 편성)** ①학부(과)는 학생의 실습 및 실기 능력 배양을 위하여 3학년~4학년 교육과정에 현장실습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.

②현장실습을 교육과정으로 운영 할 경우 최저 2학점~최대 18학점까지 편성 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3조 (이수계획서 및 이수시기)** ①현장실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소정의 기한 내에 이수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.

②현장실습의 이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현장실습을 1학기 및 2학기에 실시하는 경우 학기 개시 후 2주일 이내에 실시한다.
2. 현장실습을 여름학기 및 겨울학기에 실시하는 경우 학기 개시 후 1주일 이내에 실시한다.
3. 현장실습을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학시작 후 1주일 이내에 실시한다.

**제4조 (기초계획 수립)** 각 학부장은 현장실습 이행개시일 3주전까지 현장실습 대상자를 파악하여 기간 별 예상인원, 소요업체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교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5조 (학점 이수신청)** ①대상학생은 현장실습 이수계획의 허가를 얻으면 해당기간에 현장실습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②현장실습기간에 해당되는 학기의 소정기간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필하고 현장실습을 이행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예정기간 내에 현장실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
③현장실습 이수를 이유로 하여 다른 교과목의 이수에 지장을 주거나 수업시간에 결강할 수 없으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④현장실습(실습학기제포함)의 학점과 이수 시간은 1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.(개정2017.05.24.)

**제6조 (대상 산업체 선정)** ①학생의 전공과 적성에 따라 현장실습 대상 산업체를 지정하여 선정하며, 산업체의 범위는 국·내외 산업체로 한다.

②산업체의 섭외 및 선정은 학부(과)에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부(과) 이외에 현장실습지원센터 및 산학협력단 등 본교 행정부서에서 협조를 받아 진행 할 수 있다.

③현장실습 산업체는 전공과 관련된 기업체로 한다.

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내 자체 실험실습시설 수준이 기업체의 시설과 유사하거나 현장실습 내용이 교내 자체 실험실습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과단위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7조 (현장실습 의뢰)** 학부장은 협약이 완료된 산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현장실습을 의뢰하고 교무처에 대상 산업체 별 학생명부를 제출한다.

**제8조 (현장실습 협약)** 현장실습을 위한 산업체와의 협약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본교 산학협력단, 학생경력개발센터, 학부(과) 등에서 주관하여 진행할 수 있다.

- 제9조 (현장실습 학생의 배치)** 학부(과)장은 「현장실습 운영 규정」에 의해 확정된 산업체에 현장실습 대상학생을 지정된 기간에 배치하여야 한다.
- 제10조 (현장실습 파견준비)** 학부(과)장은 현장실습 대상학생이 원만하게 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.
1. 해당학생의 현장실습일정 및 준비사항 통보
  2. 해당학생의 현장실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작성
  3. 기타 학생 현장실습교육에 필요한 사항
- 제11조 (현장실습파견 학생 사전교육)** ①지원센터에서는 규정 제10조4항에 근거하여 현장실습파견 대상자가 결정되면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 사전교육은 지원센터의 관리 하에 학부(과)장이 실시 할 수 있다.
- 제12조 (현장실습파견 학생 지참물 등)** 지원센터 또는 학부(과)에서는 현장실습파견 학생에게 다음의 서류들을 지참시켜 파견하여야 한다.
1. 현장실습 도착 신고서
  2. 현장실습 일지
  3. 현장실습 이수확인서
  4.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
  5. 기타 필요한 사항
- 제13조 (현장실습 도착신고)** ①현장실습지에 도착한 학생은 도착 즉시 산업체의 장에게 도착 신고를 하고 현장실습 도착신고서를 작성하여 실습업체의 확인을 받아 소속 학부(과)를 경유 하여 교무처로 제출 하여야 한다.
- ②도착신고서가 접수되지 아니한 학생의 현장실습은 그 학점의 인정을 무효로 한다.
- 제14조 (기밀유지의 의무)** ①현장실습에 파견된 학생은 현장 실습기간 중에 인지한 당해 산업체 또는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학부(과) 단위 성적평가 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학기의 성적은 무효로 할 수 있다.
- 제15조 (순회지도)** ①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실습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현장파견 지도(순회지도)를 실시 하여야한다.
- ②현장파견 지도(순회지도)를 한 자는 현장실습 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(과)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현장파견 지도(순회지도)는 본교 교직원으로 한다.
- 제16조 (현장실습일지의 작성)** 현장실습교육에 참가한 학생은 현장실습일지를 매일 기록하여 현장지도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, 현장실습일지로 출결을 대신할 수 있다.(개정2017.05.24.)
- 제17조 (현장실습 이수확인서 제출)** 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현장실습 종료후 1주일 이내에 밀봉된 산업체 현장지도 담당자의 평가서와 과제물 및 현장실습일지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8조 (성적평가)** ①현장실습 성적은 산업체현장 지도담당자가 평가한 성적과 본 대학에서 부과한 과제성적 및 순회지도교수의 평가, 그리고 현장 실습일지의 기록내용 등을 근거로 평가한다.
- ②현장실습평가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각 항목별 60%이상, 종합성적 70%이상으로 평가될 때 이수인정(P)으로 처리한다.

항목	비율
산업체 현장지도자의 평가	50%
과제 및 순회지도 결과	30%
실습일지 기록	20%
계	100%

**제19조 (성적평가의 처리)** ①학부(과)장은 제18조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현장실습성적표로 작성하고 이를 교무처에 제출한다.

②교무처에서는 학부(과)장이 제출한 현장실습성적표를 수합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 한다.

**제20조 (관계서류보관)** ①학부장은 현장실습에 관계되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교무처는 제1항에서 제출된 서류를 총장의 승인을 얻어 1년간 보관 한다.

**제21조 (기타사항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현장실습 관련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